

2011. 12. 21. (수) 10:00

제17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
제3차 본회의

조례 및 규칙안 심사보고서

의 회 운 영 위 원 회

【목 차】

1.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----- 1
2.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----- 3
3.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-----5

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. 11. 22
- 나. 제 출 자: 이성복, 강철우, 안철우, 백범영, 조기원의원
- 다. 회부일자: 2011. 11. 22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. 12. 12
- 마. 의안번호: 제2011 - 83호

2 제정이유

-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「지방자치법」과 관련하여 개정된 법률과 관련 있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3 주요내용

가. 위원회의 직무 대행 사항을 정함(안 제8조제2항)

- “위원중 연장자가” 를 “의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, 다선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의 순으로” 규정함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을 “위원중 최연장자”가 수행을 하던 것을 “위원중 최다선위원으로,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연장자순으로, 다선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” 개정을 하려는 것으로
- 개정조례안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. 11. 22
- 나. 제출자: 이성복, 강철우, 안철우, 백범영, 조기원의원
- 다. 회부일자: 2011. 11. 22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. 12. 12
- 마. 의안번호: 제2011 - 84호

2. 제안이유

-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제5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과태료 부과기준(별표)을 개정 함.

- 현 행

별표 (2001. 3. 15) 과태료부과기준					
불출석		증언거부			
불응1회	불응2회이상	일부거부1회	일부거부2회	전체거부1회	전체거부2회이상
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	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	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	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	200만원이상 350만원미만	350만원이상 500만원이하

○ 개정안

위 반 행 위 별					
출석요구		서류제출 - 선서 또는 증인거부			
불응1회	불응2회이상	일부거부1회	일부거부2회	전체거부1회	전체거부2회이상
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	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	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	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	200만원이상 350만원미만	350만원이상 500만원이하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서류제출 및 선서거부 대한 벌칙이 신설되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백히 정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회의 대 집행부 견제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
-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1. 11. 22

나. 제출자: 이성복, 강철우, 안철우, 백범영, 조기원의원

다. 회부일자: 2011. 11. 22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. 12. 12

마. 의안번호: 제2011 - 85호

2. 제안이유

-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의2 제3항 및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와 조례안예고에 관하여 필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안예고의 방법,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(안 제19조의2).

-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·주요내용·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예고를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·법인 또는 기관·단체 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-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리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함.
-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.
- 당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 주도록 규정함.

나.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(안 제52조 제4항).

- 위원회는 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(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·답변을 포함 한다)를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함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의2 제3항 및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와 조례안예고에 관하여 필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지금까지 거창군의회에 접수된 조례안은 입법예고 없이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던 것을 5일 이상 입법 예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·법인 또는 기관·단체 등으로 부터 의견을 받아 처리 결과까지 통보해 주기위한 것으로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제치제의 근본이 되는 사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,
-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청구인 대표자에게 질의·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입법의 취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됨.

- 그 밖에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